

예산총칙

2014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81,397,080	14,441,912
일반회계	427,010,859	12,810,326
특별회계	54,386,221	1,631,587
공기업특별회계	8,987,169	269,615
상수도사업특별회계	8,987,169	269,615
기타특별회계	45,399,052	1,361,97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269,206	38,076
자활기금특별회계	2,016,916	60,507
수질개선특별회계	38,230,670	1,146,92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3,403	1,002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993,419	59,803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66,893	8,007
기반시설특별회계	441,909	13,257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355,851	10,676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790,785	23,724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404,063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3,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인건비는 타 비목으로 이용할 수 없다.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2. 재무활동경비
3.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4.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

제 9 조 금회 추가경정예산 성립후 연말까지 교부된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승인(명시이월 포함)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